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12.31.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7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에서 “2022년 12월 31일” 로 연장하였고,
 - 안 제29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0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2년으로 한다” 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2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7조의2)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기금 예탁 조항 삭제(안 제29조)

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안 제3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의한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u>2022년 12월 31일</u> ----- ----- ----- -----.</p>
<p>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①、② (생략)</p> <p>③ 제28조에 따른 <u>의한</u>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p> <p>④ <u>기금의 여유자금</u>을 통합관리기금에 <u>예탁</u>할 수 있다.</p>	<p>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지원금</u>----- ----- ----- -----.</p> <p>〈삭 제〉</p>
<p>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 ③ (생략)</p> <p>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연임</u>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한다.</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② (생략)</p> <p>③ 「<u>지방재정법</u>」 중 재무관과 징수</p>	<p>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지방회계법</u>」-----</p>

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
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